



[축산법령] 2009년도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

2009년도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 추진계획(推進計劃)

1 사육단계 안전관리(飼育段階 安全管理)

-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 추진
-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감축 : (2008년) 25종 → (2009년) 18 → (2011년) 9/항생제 금지
- 항생제 등 잔류 위반농가 규제(6개월 출하제한, 출하시 정밀검사) 및 지도 강화
-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 마련(2009년 6월)
-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2,700건/년)을 통한 저감 대책 효과 검증

2 사료의 위생·안전성 강화(衛生·安全性 強化)

-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 공장에 HACCP 적용 (2008, 94개중 76개소 81%)
 - 사료 공장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사용여부 일제점검 (2009년 3월)
- 동물성 단백질 사용여부 및 유해물질 검색을 위한 국내유통 사료 수거검사 등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

3 사육부터 판매까지 예방적 안전관리제도(HACCP) 적용 확대

- 2012년까지 국내 생산·유통 축산물의 80% 이상

에 HACCP 적용 추진

- 컨설팅 업체 선정(2~3월초) 및 선행요건 등 충실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업체·농장 지도·감독(분기별)
- 업종별 컨설팅 능력·경험을 충분히 검토(예: 농장 컨설팅의 경우 전반적인 사양·방역관리 지도능력 중시)
 - ※ 현황(2008년 12월 31일 기준) : 농장(380)·도축장(145) 등 1,528개소/총 물량의 60% 수준
- HACCP 적용 농장·가공장 등에 인센티브 부여
 - 군납·집단급식소의 HACCP 축산물 사용 촉진,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HACCP 계란 등 사용 확대 (학교급식: 육제품에 대해 2007년 의무화)
 - 축사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사업 지원시 HACCP 적용 농장 우대

4 가축질병 예방과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밀집 사육 방지 유도

-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10년간 1조5천억원)
 - HACCP 지정을 받았거나,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
-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 밀집사육에 따른 폐해 방지 유도

◎ 도축·가공단계 안전관리(屠畜·加工段階 安全管理)

1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등 검사프로그램 개선

• 위해도·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사 프로그램 개발

-유해 잔류물질·미생물에 대한 위해평가·관리지침 제정(2009년 6월, WTO통보 필요)

-신종 또는 위해성이 높은 유해물질·미생물 검색가능 강화(2009년 : 항생제 30종 등 유해 잔류물질 104종, 식중독균 10종 검사)

• 식육 중 사용금지 약품 잔류여부 탐색조사(2009년 잔류물질 18종, 1,770건)

〈유해잔류물질 검색 강화를 위한 규제검사 확대 방안〉

• 잔류위반 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 같은요령【별표. 1】 제2호에 의한 시료채취단위량의 120% 이상 채취 검사예, 소 1~2두 출하시 전두수, 3~5두 출하시 3두, 6~10두 출하시 5두, 11두 이상 출하시 6두 이상)

• 전수검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 :

【현행】간급도살 및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

【확대】① 간급도살 또는 기립불능 증상인 경우

②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는 경우

-부상 또는 염증상태인 가축 : 동물약품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 관절염, 폐렴, 유방염, 자궁염, 신장염, 방광염, 복막염, 늑막염, 심낭염, 심내막염, 급성 봉와직염 등이 관찰되는 경우

-주사자국·아물지 않은 수술부위가 있는 가축 : 체표에 주사자국이 있거나 최근의 동물약품 처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술부위가 관찰되는 경우

③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생체·해체검사서에서 위축성비염 등 가축전염성 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경구용 동물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식도 등의 변색, 패혈증, 비정상 체온·탈수·충혈 등 동물약품 처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전신성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

※2009년 상반기 중 위 내용을 중심으로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할 계획

-그간의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Codex 등 국제기준·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정안 마련(2009년 3월)

-관계기관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2009년 4~6월)한 후, 2009년 6월 중 개정 시행 예정

2 도축장 등 도축·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단체 주관 HACCP 운용 평가(매년 실시) 등 도축장 위생 관리 강화

-1차 : 2~3월 시·도 자체점검 → 2차 : 4~10월 HACCP 운용수준평가 → 3차 : 10~11월 시·도 자체점검 및 행정처분 등 3단계 점검 실시

-지육(도체)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경매·가공시설 설치 : (2008년) 30% → (2012년) 90%

• 2010년까지 권역별 SRM 제거시설 구비 : (2008년) 5개소 → (2009년) 7개소 → (2010년) 10개소

-기 설치 작업장에서는 월 2회, 매회 3두 이상 SRM 제거 설비 가동

• 도축장·가공시설에 HACCP·위생 시설개선 자금 지원(2009년, 600억원)

3 도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 추진

• 도축검사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2009~2010년) 및 시·도 검사관에 대한 의무교육 추진(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2009년 12월)

• 도축검사·질병방역 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2009년 4~6월간 1차 시범사업, 2009년 8~10월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도 축산물 검사사업에 반영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과 질병정보시스템 연계 등 실행방안 마련

- 모든 기립불능 소 등에 대한 BSE 및 잔류물질 검사 지속 실시

◎ 유통단계(수입포함) 안전관리

1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 : 취약 시기 기획단속, 불량축산물 신고업체 집중단속 등
- 불량 축산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확대 : (2008년) 8,500건 → (2009년) 10,000
-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해미생물 증식을 억제 하여 식육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온유통체계(콜드 체인) 강화
 - 일본 등 선진국과 CODEX기준,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금육의 유통온도 기준을 강화(2008년 8월)하여 권장 적용 중(2011년 7월 의무적용)
 - ※유통온도 기준 강화: (현행) -2°C~10°C → (강화) -2°C~5°C

2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2009년 6월)

-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의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
 - 이력제 시행기관,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도입
 - 1차(2009년 3~12월), 2차(2010년 1~11월) 시범사업 실시 후, 2010년 12월부터 본격 시행

3 식육에 대한 도축장 실명제, 포장유통 조기 정착

-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도축장 실명제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 실시 (2009년 6월 21일까지는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점검)
- 2010년까지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전면 의무화
 - (2007년 6월) 8만수 이상 도계장 → (2008년 6월) 5만수

- (2010년) 모든 도계·가공장 및 식육판매점
- 분할 판매되는 소·돼지고기는 도축장 반출 시에 한해 포장 시행방안 검토

◎ 위해정보 공개 강화

1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식품안전 위반정보 공개 근거 마련(2009년 12월)

-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영업자명, 영업장소, 위반 및 조치내역) 공개 추진
 - 현재 「축가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위해축산물 발생시 회수내역 및 잔류위반농가 등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개
 - ※제공정보 : 수입축산물 검사결과·부적합 내역, 잔류물질검사 결과·잔류위반 농가, 수거검사결과, 위생감시결과, 회수내역 등을 매월~분기별로 공개
 - ※중도장에 대한 소모성질환(PRRS) 검사결과 공개도 추진(2009년 4월)

2 위해 축산물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요령 마련

-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행정지침)」을 개정, 정보공개 요령 반영
 - 제공정보 : 제품명, 상호명, 위반내역, 회수방법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 국내·외 발생 위해에 대한 과학적 정보 및 위해 방지요령 등 상시 제공
 - 위해 발생시는 긴급경보시스템(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개·전파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 관련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 영업의 범위(營業範圍)

-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타인에게 축산물을 가공 등 의뢰 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를 말함

-본사 창고를 보유한 영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붙인 축산물을 지방 소재의 창고(영업자 소유 또는 임차)에 보관 후 유통시

-본사 창고까지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며, 지방 소재 창고는 축산물보관법에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본사 창고 이외의 지사 창고 등은 각각의 영업행위를 검토하여 해당영업에 따라 신고토록 지도

2 시설기준(施設基準)

● 시행규칙 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나. 개별시설기준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시설기준: 영업소, 창고, 반품·교환품 보관시설

① 영업소와 창고는 서로 다른 곳에 설치·임차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할 수 있음

-각 시·도는 영업신고(창고 등의 확인), 출입·검사·수거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②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의 규모(창고형 또는 냉장고형) 등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해

당 시설을 손쉽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시설은 부적절 할 것이나,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양, 유통기간, 보관품의 처리방법, 평균 반품을 등에 대해 영업신고수리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은 영업소가 위치한 장소나 건물에서 운영하도록 규정: 창고가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창고에서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영업소이며 반품을 위해 찾아오는 거래인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영업소에 위치 필요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홍보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2008년 12월 22일) 관련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포장육을 판매시 식육판매표지판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할 의무 추가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대한 사항 등은 영업자가 변경된 규정을 인지 및 준비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시 적발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개정 중

-개체식별번호와 선하증권번호의 표시 편의를 위하여 묵음번호표시 방안 추가

※고시 개정 원로시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짐

2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시행 추진(2010년)

● 2009년중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도축장과 판매장에서 포장된 닭, 오리고기만을 판매토록 할 예정

-판매업은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해포하여 절단·판매 금지

◎ 2009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계획

1 법률(法律)

-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 긴급도살 금지
- 법률 명칭 변경 및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
- 영업의 허가, 품목제조보고, 압류·폐기·회수 권한 이양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시·도지사(의 허가)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권한 이양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리 강화
-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등 검사기관 관리 강화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
- 계란집하업도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시행령·시행규칙(施行令·施行規則)

- 위생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주기 강화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하는 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지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회/2~3년)
- 기타 식육가공품, 기타 알가공품 신설
-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축산물운반업 신고 제외대상 확대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2009년도 국내산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계획

- 기관별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적(개체별 기준)

[표 1] 기관별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 실적(개체별 기준)

▶ 검사두수(위반두수)

기관	모니터링						규제검사						계						총계	진척율 (위반율, %)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소계	소	돼지	닭	오리	소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서울	7,315	4,189	-	-	-	-	11,504	1,221	141	-	-	1,362	8,536	4,330	-	-	-	-	-	12,866	204.2
							4	(3)				(3)	(3)							(3)	(0.02)
부산	400	1,650	-	-	-	-	2,050	586	156	-	-	742	986	1,806	-	-	-	-	-	2,792	111.7
							(2)					(2)	(2)							(2)	(0.07)
대구	408	1,580	1,000	-	-	-	2,988	413	226	60	-	699	821	1,806	1,060	-	-	-	-	3,687	103.6
		(4)					(4)					(4)	(4)							(4)	(0.14)
인천	637	2,435	1,034	-	80	-	4,186	144	616	62	-	822	781	3,051	1,096	-	80	-	-	5,008	118.1
		(2)	(2)				(4)	(3)				(3)	(5)		(2)					(7)	(0.14)
광주	500	2,029	-	249	-	-	2,778	459	205	-	-	664	959	2,234	-	249	-	-	-	3,442	109.3
		(1)					(1)					(1)	(1)							(1)	(0.03)
대전	769	2,297	-	-	-	-	3,066	75	2	-	-	77	844	2,299	-	-	-	-	-	3,143	136.7
		(1)					(1)	(1)	(3)			(4)	(1)							(5)	(0.16)
울산	414	849	-	-	-	-	1,263	96	169	-	-	265	510	1,018	-	-	-	-	-	1,528	105.4
		(3)					(3)		(17)			(17)	(17)							(20)	(1.31)
경기	6,761	18,871	3,918	304	-	-	29,854	5,419	2,904	42	-	8,365	12,180	21,775	3,960	304	-	-	-	38,219	165.5
		(4)	(17)	(4)			(25)	(37)	(89)			(126)	(41)	(106)	(4)					(151)	(0.40)
강원	4,516	3,408	851	-	-	-	8,775	436	325	-	-	761	4,952	3,733	851	-	-	-	-	9,536	255.7
							(1)					(1)	(1)							(1)	(0.01)
충북	1,520	6,302	2,315	547	155	-	10,839	686	483	78	-	1,247	2,206	6,785	2,393	547	155	-	-	12,086	113.8
		(1)					(1)	(3)	(2)			(5)	(3)	(3)						(6)	(0.05)
충남	1,269	5,955	2,148	-	76	-	9,448	773	762	20	-	1,555	2,042	6,717	2,168	-	76	-	-	11,008	121.6
							(6)					(6)	(6)							(6)	(0.05)
전북	1,027	5,264	3,000	498	-	-	9,789	717	627	74	-	1,418	1,744	5,891	3,074	498	-	-	-	11,207	107.0
		(4)					(4)	(4)				(4)	(4)	(4)						(8)	(0.07)
전남	1,018	3,300	2,049	709	-	-	7,076	434	328	83	-	845	1,452	3,628	2,132	709	-	-	-	7,921	106.8
		(1)	(12)				(13)	(3)				(3)	(3)	(1)	(12)					(16)	(0.20)
경북	1,827	5,344	2,203	-	98	-	9,472	1,432	836	91	-	2,359	3,259	6,180	2,294	-	98	-	-	11,831	120.0
		(4)					(4)	(4)				(4)	(4)	(4)						(8)	(0.07)
경남	1,058	4,378	1,078	180	-	-	6,694	2,105	379	18	-	2,502	3,163	4,757	1,096	180	-	-	-	9,196	129.2
		(3)	(1)				(4)	(10)	(6)			(16)	(10)	(9)	(1)					(20)	(0.22)
제주	2,147	2,860	1,101	40	-	611	6,759	157	531	-	-	688	2,304	3,391	1,101	40	-	611	7,447	145.5	
							(6)	(39)	(19)											(258)	(0.17)
계	31,586	70,711	20,697	2,527	409	611	126,541	15,153	8,690	528	-	24,371	46,739	79,401	21,225	2,527	409	611	150,912	137.2	
							(64)	(77)	(117)			(194)	(83)	(156)	(19)					(258)	(0.17)

*도축 후 지육진류검사(간이정성검사) 및 규제검사(간이정성검사) 계획물량임.

*경기도 규제 검사 위반두수 151두 중 50두는 2 농가각각 33두, 17두 위반두수임.

1 관련규정(關聯規定)

- 농림부고시 제2007-18호(2007년 4월 11일)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2 검사대상 및 항목

- 검사대상 품목 : 소 · 돼지 · 닭 · 오리 · 양(염소 포함) 및 말
 - *축산물검사관(또는 자체검사원)의 도축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대상 가족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음
- 잔류물질 검사항목
 - 총 104종 : 항생물질 30종, 합성항균제(구충제 포함) 43종, 호르몬 2종, 농약 29종

3 잔류물질 검사물량(표 2, 3. 참조)

[표. 2] 전년대비 검사 건수 비교

구분		2008년	2009년	비고
간이정성검사	모니터링검사	91,990 (83.6%)	89,300 (81.2%)	2.9% 감소
	규제검사	18,010 (16.4%)	20,700 (18.8%)	14.9% 증가
	소계	110,000	110,000	
정밀정량검사	계	10,000	10,000	
	계	120,000	120,000	

[표. 3] 2009년 축종별 검사 계획 물량

구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계	
간이정성검사	모니터링검사	14,800	53,200	19,000	1,900	300	100	89,300
	규제검사	11,750	8,200	700	50	-	-	20,700
	소계	26,550	61,400	19,700	1,950	300	100	110,000
정밀정량검사	계	2,865	3,915	2,345	545	270	60	10,000
	계	29,415	65,315	22,045	2,495	570	160	120,000

[표. 4] 도축장의 식육중 미생물 검사 결과

구분	계획	실적	권장기준초과(비율)	부적합 도축장(위생감독 강화조치)
2008년	120,000			
▣ 일반세균수	47,616	54,048	72 (0.05)	23개소(소4, 돼지10, 닭6, 오리3)
▣ 대장균수	47,616	53,754	9 (0.02)	7개소(소3, 닭4)
▣ 살모넬라	24,768	(취합중)		
2007년	120,000	155,029	251 (0.16)	34개소(소9, 돼지7, 닭13, 오리5)
▣ 일반세균수	38,975	49,605	54 (0.11)	18개소(소3, 돼지7, 닭5, 오리3)
▣ 대장균수	38,975	49,567	20 (0.04)	15개소(소6, 닭7, 오리2)
▣ 살모넬라	42,050	55,859	177 (0.32)	1개소(닭1)
2006년	120,000	146,503	412 (0.28)	19개소(소4, 돼지2, 닭9, 오리4)
▣ 일반세균수	38,848	44,334	24 (0.05)	8개소(소2, 돼지2, 닭1, 오리3)
▣ 대장균수	38,848	44,339	18 (0.04)	8개소(소2, 닭5, 오리1)
▣ 살모넬라	42,304	57,830	370 (0.64)	3개소(닭3)

*살모넬라의 경우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사프로그램 시행상황 점검 및 재검토 필요(2009년 상반기)

<검사물량 산정 기준>

- 총 검사건수는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인 120천건으로 책정
-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규제검사 비율을 18.8%로 설정하여, 간이정성검사 물량 110천건 중 모니터링검사는 89,300건(81.2%), 규제검사는 20,700건(18.8%) 실시
 - 규제검사 비율 : (2008)16.4% → (2009)18.8%
- 도축장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결과【표 4. 참조】
- 일반세균수 · 대장균수【표 5. 참조】

2009년도 식육중 미생물 검사계획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 목적(目的)

【표 5】오리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시료수	%	시료수	%	시료수	%
일반 세균수	계	1,764	100.0	2,744	100.0	2,422	100.0
	10°이하	60	3.4	46	1.7	44	1.8
	10°이하	206	11.7	365	13.3	320	13.2
	10°이하	530	30.0	909	33.1	849	35.0
	10°이하	958	54.3	1,415	51.6	1,204	49.7
	10°초과	10	0.6	9	0.3	5	0.2
대장 균수	계	1,764	100.0	2,741	100.0	2,237	100.0
	10°이하	487	27.6	850	31.0	445	19.9
	10°이하	624	35.4	1,432	52.2	1,347	60.2
	10°이하	651	36.9	457	16.7	445	19.9
	10°이하	2	-	2	-	-	-
	10°초과	-	-	-	-	-	-

【표 6】일반세균수·대장균수

구분	구분	소	돼지	양	닭	오리	합계
일반 세균수	도축장	15,890	17,815	600	8,197	2,046	47,616
	포장처리장	430	584	15	193	64	
	판매업소	633	710	15	289	135	
대장 균수	도축장	15,890	17,815	600	8,197	2,046	47,616
	포장처리장	430	584	15	193	64	
	판매업소	633	710	15	289	135	
합계		33,906	38,218	1,260	17,358	4,490	95,232

• 식육 중 미생물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통한 축산물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2 관련규정(關聯規定)

- 농림부고시 제2007-57호(2007.9.3)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 검역원고시 제2008-28호(2008.12.30)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 검사대상 품목(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제4조)

• 국내 작업장(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업소)에서 도살·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포함)의 식육

4 검사기관(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제5조)

• 모니터링검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탐색조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4 검사 계획: 120,000건 이상

- 일반세균수·대장균수【표 6. 참조】
- 살모넬라: 소 300 도체, 돼지 1,000 및 닭·오리 22,000마다 각 1건
- 탐색조사: 3,300건(소 1,100, 돼지 1,100, 닭 1,100)

※오리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음. (정부 발표 요약본)